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14조제2항 관련)

어업의 종류	대상 지역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마을 어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마을어장 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비고

1. “마을어장 형망선”이란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
2. “자원관리채취선”이란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